

# 뚝딱사회보험법

## 제2판 1쇄 정오표 및 추록

(2026년 05월 22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 및 추록은 2025년 10월 14일 발행된 “뚝딱사회보험법(제2판)”  
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**독막사회보험법(제2판) 제2판(2025년) 1쇄 - 정오표 및 추록**

**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6년 05월 22일 기준)**

2025년 10월 14일 발행된 **독막사회보험법(제2판) 1쇄**의 추가(보완)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 및 추록을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
-------------	------

**[시험과 관련있는 개정사항] - 시험 전 체크 필요**

1. **p.128 4. 고용조정 지원요건 등-지원요건, 고용유지조치**  
- '근로시간 단축'부분만 남기고 휴업에 관한 용어 삭제
2. **p.130 4-5.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**  
- 지원요건 단순화
3. **p.375 2.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(법문내용 동일하나 2026년 시행중인 부칙 내용을 추가하였음)☆☆**
  - (1)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여금/부담금 각각  
- 부칙 : 2026년 :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
  - (2)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 
- \*\*부칙 : 2026년 :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

**[법 개정]**

<p><b>p.128</b> 4. <b>고용조정 지원 요건 등</b> - 우선지원 사업주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b>고용유지 지원금</b>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b>우선지원 사업주</b></td> <td style="padding: 10px;"> <p>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</li> <li>2.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</li> </ol> <p><b>시행령 제18조</b>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</li> <li>2.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3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4. (추가)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고용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한 사업주</li> </ol> </td> </tr> </table>	<b>고용유지 지원금</b>	<b>우선지원 사업주</b>	<p>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</li> <li>2.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</li> </ol> <p><b>시행령 제18조</b>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</li> <li>2.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3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4. (추가)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고용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한 사업주</li> </ol>
<b>고용유지 지원금</b>	<b>우선지원 사업주</b>	<p>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</li> <li>2.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</li> </ol> <p><b>시행령 제18조</b>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</li> <li>2.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3.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4. (추가)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고용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한 사업주</li> </ol>		

<p>p.128 4. 고용조정 지원요건 등 - 지원요건, 고용유지조치</p>	<p>[법 개정] 지원요건과 고용유지 조치 통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4 327 1202 643"> <tr> <td data-bbox="314 327 430 480">고용유지 지원금</td> <td data-bbox="430 327 559 480">지원 요건</td> <td data-bbox="559 327 1202 480">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[일용근로자,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,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은 제외한다]에게 <b>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,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(이하 “고용유지조치”라 한다)</b>를 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(이하 “고용유지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14 480 430 643"></td> <td data-bbox="430 480 559 643">고용유지 조치</td> <td data-bbox="559 480 1202 643"></td> </tr> </table>	고용유지 지원금	지원 요건	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[일용근로자,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,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은 제외한다]에게 <b>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,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(이하 “고용유지조치”라 한다)</b> 를 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(이하 “고용유지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		고용유지 조치	
고용유지 지원금	지원 요건	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[일용근로자,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,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(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은 제외한다]에게 <b>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,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(이하 “고용유지조치”라 한다)</b> 를 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(이하 “고용유지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					
	고용유지 조치						
<p>p.129 4-2.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</p>	<p>[법 개정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4 725 1202 1052"> <tr> <td data-bbox="314 725 430 1052">파견 사업주 등 지원</td> <td data-bbox="430 725 1202 1052"> <p>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(이하 이 항에서 “수급사업주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<b>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</b>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①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(<b>파견근로자</b>)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<b>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</b></p> <p>②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<b>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</b></p> </td> </tr> </table>	파견 사업주 등 지원	<p>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(이하 이 항에서 “수급사업주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<b>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</b>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①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(<b>파견근로자</b>)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<b>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</b></p> <p>②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<b>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</b></p>				
파견 사업주 등 지원	<p>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(이하 이 항에서 “수급사업주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<b>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</b>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①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(<b>파견근로자</b>)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<b>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</b></p> <p>②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<b>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</b></p>						
<p>p.129 4-3. 고용유지 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- 의의</p>	<p>[법 개정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4 1134 1202 1573"> <tr> <td data-bbox="314 1134 430 1573">고용유지 조치 계획</td> <td data-bbox="430 1134 559 1573">의 의</td> <td data-bbox="559 1134 1202 1573"> <p>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<b>고용유지조치계획</b>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, 고용유지조치 대상자,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(<b>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</b>)와 협의를 거칠 것. 다만,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직전 달(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)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</p> </td> </tr> </table>	고용유지 조치 계획	의 의	<p>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<b>고용유지조치계획</b>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, 고용유지조치 대상자,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(<b>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</b>)와 협의를 거칠 것. 다만,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직전 달(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)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</p>			
고용유지 조치 계획	의 의	<p>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<b>고용유지조치계획</b>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, 고용유지조치 대상자,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(<b>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</b>)와 협의를 거칠 것. 다만,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직전 달(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)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</p>					

4 **독특사회보험법**

<p>p.129 4-4. 고용유지 지원금의 금액 등</p>	<p>[법 개정]</p>	
<p>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금액</p>	<p>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: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(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)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: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</p>	
<p>지급 기간</p>	<p>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한다</p>	
<p>p. 130 4-5.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</p>	<p>[법 개정] 의의와 요건 전체 아래와 같이 통합</p>	
<p>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</p>	<p>의 의</p>	<p>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,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<p>요 건</p>	<p>요 건</p>	<p>1.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: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2.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: 피보험자 10명 이상 3.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: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4.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: 피보험자 100명 이상</p>
<p>지원금 수준</p>	<p>지원금 수준</p>	<p>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지급 기간</p>	<p>지급 기간</p>	<p>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
<p>p. 131</p> <p>5. 지역고용 촉진지원금</p>	
<p>p. 132</p> <p>6-2. 고용촉진 장려금</p>	<p>[법 개정] - 지급 제한 규정 공통 개정(하나로 압기)</p> <p>임금 등을 체불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에 따라 상습체불사 업주로 정해진 사업주</p>
<p>p. 132</p> <p>6-6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</p>	
<p>p. 375</p> <p>2. 연금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</p>	<p>[내용 추가] 부칙 추가</p> <p>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,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,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**부칙 : 2026년 1만분의 475</p> <p>④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 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,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. **부칙 : 2026년 1천분의 95</p>